

한국과 일본의 주요 차이점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본 자료는 C&S와 RYUKA가 협동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한국C&S 손원 mailbox@cnsnat.com 일본RYUKA 아키히로 류카 info@ryuka.com

1. 특허 (한국부분 : 2019년1월8일 개정, 일본부분 : 2019년10월18일개정)

	한국	일본
신규성 상실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월 이내에 출원 할 것 •2015년7월29일 이후의 출원인 경우 •명세서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와, •특허사정, 특허심결(거절의 취소심결)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설정 등록 전에도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월 이내에 출원 할 것 •출원시에 신청해야 함
선출원을 참조하는 특허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언어의 외국 출원이든지 참조 가능 •분할, 변경, PCT출원에서는 불가능 •특허청구범위의 일문은 필요 •출원 후 4개월 이내에, 명세서 및 필요한도면 등의 제출이 필요
외국어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만 가능 (일본어는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언어든지 가능
외국어출원의 번역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14개월이고, 제3자에 의한 심사청구의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16개월과, 그 후에 받는 제출명령에 대한 응답기간 2개월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국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3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번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출원일이 2015년 이후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1개월 연장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국내이행일로부터 2개월 중 늦은 날까지
•PCT 원문에 기초하여 오역 정정 가능		

우선권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단, 일본과 한국 간에는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측 동일(同左) + 보정명령으로 지정되는 기간 내
특허청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유예 가능 •단, 신규사항의 추가는 인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함
종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글멀티 (멀티의 멀티는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멀티의 멀티 가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 등의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클레임 할 수 있음 •프로그램의 기록 매체는 보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서 클레임 할 수 있음
인체의 치료방법 등	보호되지 않음	
심사청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일이 2017년3월1일 이후 •출원으로부터 3년 출원일이 2017년3월1일 전 •출원으로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으로부터 3년
심사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심사의 지연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의 지연을 청구할 수 없음.
심사청구료의 반환	심사착수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이 반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액이 반환됨
심사기간	심사청구로부터 OA까지 약 9개월~1년	
조기심사 우선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로부터 3개월 이내에 OA가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로부터 2개월 이내에 OA가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납료는 약 \$400. 대리인비용은 약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납료는 없음. 대리인비용은 약 4만엔
	일-한 심사 하이웨이도 가능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오자·탈자 •거절이유가 되는 명백한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외국의 심사결과 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관은, 우선권의 기초출원의 심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이내: 4차(4개월)까지 연장 가능 •5차 이후에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관이 승인하면 가능(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비교적 쉽게 인정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일자(在日者): 60일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단 심판청구 후에는 연장 불가능) •재외자(在外者): 3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기간경과 후에는 연장 불가능	•기간경과 후에도 연장 가능 (단 고액)
	연장 관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째 2만원 •4차째 12만원 •2차째 3만원 •5차째~ 24만원 •3차째 6만원 	연장 관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0엔/차 •기간경과 후의 연장청구는 51,000엔
분할출원	우측사항에 더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거절결정의 취소심결(특허심결 또는 재심심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세서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 •특허사정 후(심판청구 전에만) •거절사정 후
실용신안으로부터의 변경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의 송달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
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결정통지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재외자는 최대 60일) 연장 가능 •청구시에 보정이 필요 •거절유지 ⇒거절사정불복심판/분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치심사에 상당함 일본에서는 전치심사만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청구시에 보정함으로써 전치심사로 부처짐
거절사정 불복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결정통지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재외자는 최대 60일) 연장 가능 •보정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일자 : 등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 등본송달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장 불가능)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 가능
심판 및 재심청구 수속의 추완	•불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기간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 가능	•불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재외자: 2개월 이내)이고, 기간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심판청구 후의 보정	거절이유가 나오면 보정을 할 수 있음	
	•거절이유가 거의 나오지 않으나, 새로운 문헌을 제시함으로써 받는 경우가 있음	•특허사정 할 수 있는 클레임을 면담 등에서 제시하면, 비교적, 거절이유를 받기 쉬움
특허결정 후의	•2017년 3월 이후,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에 명백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없음

직권재심사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를 취소하고 재심사 가능	
이의신청 (한국: 특허취소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청구 가능 •정정의 기회 있음 •이의신청인은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3월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 •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의 6개월 후까지 •문헌공지에 의한 진보성·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경우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공보의 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재요건, 신규사항추가 위반 등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인만 •모인(冒認)은 본인만 청구 가능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정정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변서 제출기한 내 •직권심리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 	
	•우측 기간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결예고를 행하는 경우의 지정기간 내 •무표심판기각심결의 취소판결환정 후에, 신청이 있었던 경우의 지정기간 내
정정심판 청구 가능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을 행사 가능한 기간 •단, 특허이의신청 (한국: 특허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係屬)중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효심판이 계속~변론종결까지도 (특허취소신청이 계속중이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법원에 청구 가능 •좌측 기간은 불가능
정정심판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속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특징으로 감축(減縮)하는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만큼 까다롭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개월만에 심결을 받을 수 있음 •명세서에 기재된 특징으로 감축(減縮)하는 정정을 포함하여 98%의 심결에서 정정이 인정되었음 (2013년)
소송수속의 중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재판소의 직권에 의해 가능	•재판소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
연금의 반환	•우측사항에 더하여, 특허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음해 이후의 연금이 반환	•과오납, 취소결정 또는 무효인 경우, 다음해 이후의 연금이 반환
특허권의 이전청구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의 이전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음	
실시행위	•수출을 포함하지 않음	•수출을 포함함
균등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치환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그 외 요건은 일본과 동일	아닐 것. 그 외 4가지 요건이 있음
간접침해	하기의 물건을 업(業)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의사표시(申出)를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방법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좌측사항에 더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발명에 관련된 물건의 생산 또는 방법의 사용에 이용하는 물건으로서, 발명의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을, 발명의 실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생산·양도 등을 하는 행위 •침해품을, 업(業)으로서 양도 등 또는 수출을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침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로부터 10년	•침해 행위로부터 20년

2. 실용신안 (한국부분 : 2017년3월21일 개정, 일본부분 : 2019년10월18일개정)

	한국	일본
심사청구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 (분할출원/변경출원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가능)	•없음
기술평가서	•없음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서가 필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3. 의장(디자인) (한국부분 : 2017년9월22일 개정, 일본부분 : 2019년10월18일개정)

※ 괄호 <>는, 2019년의 일본의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본 개정법은 2020년4월1일 시행 예정

	한국	일본
헤이그 협정	가입 완료	
복수의장의 출원	O	O <변경>
관련의장	기본의장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 가능 관련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은 등록 불가	기본의장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출원 가능 나아가, 관련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의 등록도 가능 <보호확대>
화상	원칙: 화상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음 O: 물품에 표현되거나 특정 가능한 표시부에 표현되어 있는 화상	원칙: 기기의 조작처럼 제공되는 화상 또는 위기(機器의 오기로 보임)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 O: 물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화상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보호확대> O: 물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화상 (도로에 투영된 화상) <보호확대>
건축물	원칙: 보호되지 않음(내장도 같음) O: 조립식 또는 이동식 건축물의 외관	O: 건축물의 외관·내장 <신규>
폰트	O (보호됨)	X
필요도면	6면도 (동일 또는 대칭도면은 생략 가능)	
	• 사시도(대체로 필요함) • 폰트디자인의 경우에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	• 6면도만으로 의장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시도 또는 단면도
물품의 구분	출원 시 반드시 기재 요	
	X <폐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1년 이내에 출원 할 것 •출원시,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의 통지서발송 전까지, 이의신청답변시, 무효심판답변시에 신청 가능	6개월 이내에 출원 할 것 •출원시에만 신청 가능
출원공개	•신청에 의해 가능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함)	•없음
심사유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의 대상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이 있음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4개월 연장 가능	• 재일자: 40일 (연장 불가능) • 재외자: 3개월 (청구에 의해 1개월 연장)
보정시기	• 디자인등록결정통지서의 송달 전 • 등록거절결정 후, 재심사 청구시 (단, 보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 청구 가능) • 거절불복심판청구 후 30일 이내	• 심사, 심판, 재심계속중
이의신청	•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가능	• 없음
존속기간	• [출원]으로부터 20년	• [출원]으로부터 25년 <보호확대>
특허출원 으로부터 의 변경	• 불가능	• 다수의 의장을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시켜 두고 나중에 선택하여 의장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함 • 변경을 늦추어서 의장등록을 늦춤으로써 권리의 만료를 늦출 수 있음

4. 상표

(한국부분 : 2016년9월1일 개정, 일본부분2019년10월18일 개정)

	한국	일본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 에 대한 지정상품/ 지정역무 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상품상표에 대한 역무추가, 및 역무상표에 대한 상품추가도 가능) • 등록번호가 원상표와 같아져, 갱신을 관리하기 쉬움 • 단, 존속기간은 원상표과 동일해짐. • 출원/등록비용은, 통상의 출원과 같음 • 갱신비용은, 원상표와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불필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필요. 단, 같은 클래스에 있어서 지정상품/역무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 초과당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함. 	불가능
표준문자	제도 없음	폰트를 지정하지 않는 표준문자에 의해

상표		상표등록 할 수 있음
방호표장(防護標章)	제도 없음	등록상표가 주지인 경우, 비유사한 상품/역무에 대하여 방호표장을 등록 가능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외국상표 권자의 국내판매 대리점 등에 의한 부정한 상표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이유, 무효이유 • 무효심판제척기간 없음 	취소이유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전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후 이의신청)
설정등록 료 납부시의 일부포기	지정상품/역무별로 가능	구분별로 가능
유사한 지정상품/ 역무의 분할이전	불가능 (위반하면 취소이유가 됨)	가능
불사용취 소심판	일본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소멸됨
권리범위 확인심판	• 지정상품별로 청구 가능	없음